

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-56호

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9월 17일

임실군의회 의장



1. 개정이유

군민의 편의증진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능력향상과 복리후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여 군정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조문 추가 신설(안 제8조의2제2항제5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5년 9월 21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전자우편·직접방문

1) 주 소: (55927)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, 임실군의회(의회사무과)

2) 전 화: 063-640-2883, 팩스 063-640-2699

3) 전자우편: charity81@korea.kr

4. 제정안: 붙임

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의2(사기진작) ① (생략)</p> <p>②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의2(사기진작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

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

□ 『지방자치법』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